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1호 2017년 2월 pp.115~142
한국세무학회

국내은행의 경영실적자료를 사용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실증분석 연구*

김유찬** · 김종완***

<요 약>

금융·보험업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생각할 때 국가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데, 이 업종 전체를 일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라면과 같은 서민 생필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금융업 같은 주요 산업을 일괄 면세대상으로 두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쟁점은 이자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여부이다. 본 연구결과, 이자에 대한 VAT 과세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논거를 제시하고, 그 논거에 따라 국내은행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에 그 세수와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목적이다. 실증분석은 금융감독원 공시 2014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을 근거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총 세수는 2조2,989억 원 증가하고, 은행들은 물건비에 대한 VAT 6,283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가계 소득5분위별 세부담에서 미미한 역진성 발생, 예금금리에는 영향이 없고, 대출금리는 가계와 면세기업인 경우 이자율에 대한 세율만큼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예금거래에는 영향이 없고, 대출수요에는 과세기업의 경우 영향이 없고 가계차주에는 부(負)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서비스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 늘어나는 세수 대부분을 가계부분이 부담해야 하는 점과 비록 크지는 않지만 소득계층별 역진성이 커지는 것은 과세전환의 부담요인이다. 그러나 현재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가구당 세부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분에서 추가 발생하는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고 제도의 정착률을 위해 가계부분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하되, 경과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정상세율로 이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부가가치세, 금융서비스, 면세, 정책적 규범, 국내은행 부가가치세

* 이 논문은 2016년 8월 김종완의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발전시킨 것임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99yckim@gmail.com, 교신저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금융전문위원, jwangel315@gmail.com, 주저자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2013년말 기준) 중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33개 국가 중 비교적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수율¹⁾은 67%로 OECD 국가 중 뉴질랜드(99%), 룩셈부르크(92%), 에스토니아(76%), 스위스(71%), 이스라엘(68%) 및 일본(67%)에 이어 7위 수준이다(홍성훈·성명재 2013, 33-36). 2014년도 부가가치세는 세수 면에서 57.1조원이 겹쳐 전체 국세 중 27.8%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 면에서 세수에 기여가 가장 큰 세목이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제의 성공적인 정착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제도정착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제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면세범위(대상)에 대한 논란과 세율 인상 주장이다.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은 한국은행 발표 2011년 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분류 168개 품목 중 34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전체 168개 품목의 공급액 중 34개 면세 품목 비중은 18.7%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유찬 2013, 195-196).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논란이 큰 이슈 중 하나이다. 2014년 기준 금융 및 보험업의 GDP는 75조5,58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9%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496조 원으로 전 산업 중 18.2%의 점유비를 갖는 분야이다. 이처럼 전체 산업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을 일괄하여 면세분야로 두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갖는 많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업종)은 조세가 추구하는 규범 측면에서 적합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재정 목적적 규범, 정책적 규범 및 간편화 규범에 비추어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면세 대상으로서 그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면세대상으로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왜곡이

1) 부가가치세 세수율(VAT Revenue Ratio ; VRR)은 부가가치세제도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OECD에서 개발하였으며, “세수율 = 세수 ÷ (최종소비지출 - 세수) × 세율”로 계산한다(홍성훈·성명재 2013, 33).

크므로 면세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흐름 속에서 금융서비스도 면세를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연구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서비스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세 기술적인 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함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토대 위에서 국내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실증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 중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되, 선행연구의 주장들을 현재 은행 실무상황에 비추어 평가하여 거기서 과세 가능성에 대한 논거를 찾아내고,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국내은행들의 실제 영업실적을 근거로 그 세액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김종완(2015)의 기존연구에 더하여 1)부가가치세 세액추정 실증분석 범위를 K은행에서 18개 국내은행 전체로 확대하고, 은행업 전체에 VAT를 과세할 경우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과세전환 이후 경제적 효과를 가)가계부문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 나)은행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다)예금 및 대출수요에 미치는 영향, 라)조직변경의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3)현행 금융서비스 중 VAT 과세대상 업무현황을 가)면세대상 범위 변동추이와 나)일부 분야 과세의 효과 및 한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VAT 과세의 실증분석은 국내은행 경영실적을 전통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의 틀인 “매출액-매입액”형태로 만들어 추정하는데, 국내은행의 범위는 금융감독원 업무자료에 은행경영통계로 공시하는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한 고객분류(과세기업, 면세기업, 가계) 등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일부 은행의 세부 재무분석 자료를 근거로 먼저 분류하고, 이를 참조하여 항목별로 같은 비율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II. 금융서비스 VAT 과세에 대한 선행 연구

1. 금융서비스 과세에 부정적인 주장

금융서비스 과세여부에 대한 논의 초기에는 주로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았다. Shoup(1947)은 이자의 성격을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고 미래 소비를 현재 소비로 바꿔주는 대가로만 보아, 부가가치를 유발시키지 않으므로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Grubert/MacKie(2000)는 금융서비스는 소비자의 효용함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 자체로 소비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의 자금대

여서비스도 직접 소비할 수 없는 것이며, 단지 미래 소비와 현재 소비의 대체관계를 중개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하면 현재의 소비와 미래 소비의 선택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최명근(2000), 안창남(2002)은 이자는 임금, 이윤과 더불어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그 자체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hia/Whally(1998)는 CGE(일반균형모델)으로 금융서비스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소비세 과세와 포함한 소비세 과세에 대해 모의실험(Simulation)을 하였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금융서비스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가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과세 기술적인 어려움과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의 이자흐름 과정의 특성상 이자를 과세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창희(2002)는 기업이 가계부문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이것은 이자를 지급하는 가계의 소비가 그 만큼 줄고 이자를 받는 기업의 생산요소 제공자의 소비가 그 만큼 늘어남을 의미하며, 소비총량은 불변이므로 굳이 과세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업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수입이자를 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창희(2002)는 은행은 은행고객인 예금자나 차입자로부터 순수 금융서비스 대가인 수수료를 구분하여 따로 받지 않고 이자에 포함하여 주고받음으로써 은행의 서비스 대가가 이자 속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안창남(2002)은 금융기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비품비·소모품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되어 현행 면세에 비해 오히려 부가가치세 세수가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창희(2002)는 은행의 소득은 국민경제 입장에서 보면 새로이 생겨나는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용역과 마찬가지로 과세해야 마땅하지만, 과세기술 면에서 볼 때 단일세율에서는 각 개인에게 과세할 필요가 없고 기업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각 개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와 같은 효과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Hoffman et al. (1987), Jack(2000), McCann/Edgar(2003) 등은 이자에 대한 VAT를 근본적으로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면세로 할 것이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금융서비스에 대한 VAT 과세를 찬성하는 주장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는 주장은 면세제도가 갖는 경제적 왜곡효과를 크게 주장한다. Merrill/Adrion(1995)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비과세하면 이 부분의 가격이 다른 재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왜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성의 “1984년 세계개혁보고서”는 이자의 성격이 미래 소비를 현재 소비로 바꾸주는 것에 대한 대가이고, 미래의 소비를 현재 소비로 앞당겨 주는 기능 자체가 소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효용을 증대시켜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홍범교 외(2004)는 이자가 부가가치 구성요소 자체이므로 VAT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부가가치 구성요소인지의 여부는 당해 용역이나 활동의 기능적·본질적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이나 활동의 조달원천을 기업 내부에 두느냐 외부에 두느냐의 거래 형식적 문제이므로 이자가 외부로부터 제공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는 이자에 포함하여 주고 받기 때문에 과세하기 어렵다는 이창희(2002)의 주장에 대하여는 냉장고의 판매가격에는 냉장고 자체 가격과 일정 기간 내의 A/S 대가가 포함된 것이지만 과세하고 있는 것처럼 이자에 용역 대가가 숨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김유찬·한광석(2006)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해 Cash-flow 기반으로 과세할 경우 기존에 제기되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과세 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CGE 모형을 통하여 실증분석 하였는데, 세수증가분을 민간경제에 환급함으로써 세수 중립적으로 과세했을 경우 GDP, 투자, 금융부문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김유찬·장근호(2006)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VAT 면세는 면세제도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점 외에 금융기관 자신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숨은 부가가치세(hidden VAT)가 발생하여 내부 중립성을 훼손하고 그 부담이 기업에게 전가되어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는 외부중립성도 깨뜨리며, 금융서비스를 다른 일반 재화·용역 보다 우대함으로써 개인의 소비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세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자와 금융서비스 대가를 분리하여 과세하자는 주장도 있다. McCann/Edgar(2003)은 이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도 그 효과가 이자나 다른 분야로 전가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안창남(2002)은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결정기준은 재화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야 하고 사업자의 업종이나 재화의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용역²⁾만 면세로 하고, 본질적인 업무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Jack(2000)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선택의 중립성을 위해 이자율 같은 일정한 비례율의 형태를 갖는 서비스 대가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하고, 분리가 가능한 고정액의 서비스 대가는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여기서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용역이라 함은 은행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고유업무(협의의 은행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유업무 즉, 전통적인 수신·여신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이자 이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서비스 대가(수수료)가 많이 있다.

3. 금융서비스 VAT 과세 방법론에 대한 연구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 할 때 기술적인 면에서의 어려움 중 하나는 부가가치를 정확히 추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출이자 중 어느 만큼이 시간선호에 대한 대가이고, 어느 만큼이 은행이 실질적으로 제공한 서비스 대가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Poddar/English(1997)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Cash-Flow(현금흐름) 방식의 VAT 과세를 주장하였다. Cash-Flow(현금흐름) 방식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매출과 매입을 인식하여, 자금 차입 시의 현금수입(차입금원금, 수입이자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인식하고, 현금지출(지급이자 및 상환 차입금원금)은 매입으로 인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현금흐름(Cash-Flow) 방식은 특별한 조정장치 없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금흐름(Cash-Flow) 방식은 1)자금 차입자는 차입이 곧 과세매출로 인식되어 차입금 해당 부가가치세를 차입과 동시에 부담해야 하고, 2)이 방식을 처음 도입할 때나, 차입기간 중에 세율 변동이 있게 되면 차입시점의 세액과 상환시점의 세액이 달라지는 문제, 3)금융거래 관련 환급세액 계산이 복잡하여 납세준용비용이 높고, 4)과생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거래에서 지분거래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부채에 따른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과세해야 하는 시스템 상의 복잡함 등의 문제점이 있다(김유찬·한광석 2006, 83-85).

현금흐름(Cash-Flow) 방식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EU에서는 조세계정(TCA ; Tax Calculation Account)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방법은 TCA를 통해 세금납부를 이연시키는 방법으로, 자금차입 초기 세액만큼 추가 자금부담이 생기는 문제와 자금 차입기간 동안 세율이나 조세정책이 변동하는 경우 세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방식은 비금융사업자들도 세금계산을 위해 TCA를 만들고 모든 금융거래를 기장해야 하는 점에서 납세준용비용이 높고, 조세이연계정에 이연된 금액의 이자 계산을 위한 기준이자율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금융기관만 조세이연계정(TCA)을 만들어 세액을 계산하고, 금융기관이 세액을 개별 사업자에게 통지해 주는 Truncated TCA 방식이 제안되었다(김유찬·한광석 2006, 86-89).

이러한 방법 외에도 현금흐름(Cash-Flow)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1)금융서비스 수요자를 VAT 납세자와 면제자로 구분하여 납세자에게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자의 서비스에 사용된 중간매입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2)금융서비스 수요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매입세액을 추정(인정)하여 공제를 허용하고, 3)우리나라 교육세 부과방식과 유사한 총수입에 대한 과세 방안, 4)직접 개별 생산요소 소득을 계산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거기에 과세(예 ; 프랑스의 급여세)하는 방안(부가방식 ; addition method), 5)부가방식과 반대의 공제방식(subtraction method) 등이 제시되었다(김유찬·한광석 2006, 92-95).

4. 금융서비스 VAT 면세논리의 검토와 은행실무상황을 고려한 비판

가. 이자에 대한 면세논리 검토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타당성 연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자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느냐 혹은 과세대상으로서 적정한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앞 1절~3절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크게 분류하면, 1)면세해야 한다는 주장, 2)분리하여 과세하자는 주장, 3)과세하자는 주장, 4)과세방법론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3)과세하자는 주장을 제외한 여타 주장들은 모두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제기하는 주장들이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에는 이자에 대한 과세 가능성 검토가 가장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주장 대부분이 무의미한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최명근(2000)과 안창남(2002)은 이자가 임금, 이윤과 더불어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그 자체이므로 VAT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종업원의 근로활동 유형은 자체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와 외부로부터 outsourcing(전문 인력공급업체 용역)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활동 그 자체는 기능적·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내부 종업원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구성하고, 외부 outsourcing 인력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 대가를 지불하므로 부가가치를 구성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는 그 활동이나 용역(서비스)의 본질적·기능적 차이가 아니라 그 조달원천을 사업체 내부에 두느냐 외부로부터 조달하느냐의 거래 형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외부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본다(홍범교 외 2004, 147).

Shoup(1947)과 Steuerle(1985)는 이자는 미래의 소비를 현재 소비로 바꾸어 주는 대가로서만 작용하고 부가가치 창출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건의 공간적 재배치인 물류서비스에 대해 VAT를 과세함을 생각하면 소비의 시간적 재배치 대가인 이자에 대해 VAT를 과세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활용함으로써 미래 소비보다 현재의 소비를 선택했다면 이것도 소비자(대출금 이용자)의 효용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므로 이 대가인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창희(2002)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인데 이자나 돈 그 자체는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직접 소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를 법률·회계·세무서비스³⁾ 대가와 비교할 때, 돈을 활용하여 뭔가를 하고 만족을 얻는 것과 앞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동 서비스를 받고 만족을 얻는 것은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금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이자와 부동산 이용 대가로서의 임대료도 그 성

3) 법률서비스·회계서비스·세무서비스 및 관세사의 자문서비스는 1997년 부가가치세제 도입 당시에는 면세대상이다가 1999.1.1.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격이 유사한데, 현재 법률서비스 대가와 부동산 임대료에 대해 VAT를 과세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자에 대하여도 VAT를 과세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나. 금융서비스 VAT 과세 방법론에 대한 검토

Poddar/English(1997)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으로 현금흐름에 의한 과세 방법(Cash-Flow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Cash-Flow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TCA 방법, Truncated TCA 방법 등이 순차적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Cash-Flow 방식 등 과세 기술상 대안에 대한 연구들은 그 밑바탕에 자금흐름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가, 이자가 과세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들로 보인다. 따라서 이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전통적인 CIS 방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굳이 Cash-Flow 방식 같은 방법론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다른 한편,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 Cash-Flow 방식, TCA, Truncated TCA 등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금융서비스의 자금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비교하면, 자금사용 대가인 이자는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임대료와 같은 성격인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차를 할 때 대상물건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여하는 자금(원금) 자체는 과세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매우 복잡하게 보이는 과세 기술적인 방법론은 굳이 고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은행 실무상황을 고려한 비판

본 절 실무상황을 고려한 기존 연구 비판은 이자에 대하여 VAT 과세가 가능하다고 전제하면 무의미한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부분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자 할 경우, 유용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은행의 실무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들이 주장한 내용을 평가하고자 한다.

안창남(2002)은 전체 금융서비스에 대해 일괄 면세하기보다 본질적인 업무 관련 용역은 면세로 하고 그 이외의 서비스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은행실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대가 상호간 주고받음을 통해 가격왜곡(가격전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고객이 대출거래(본질적인 업무)와 대여금고이용(비본질적인 업무) 등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거래를 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이자에 대하여는 면세로 하고 대여금고이용 수수료에만 과세를 할 경우, 고객이 내는 대출이자과 수수료의 합계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금리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내부 가격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⁴⁾.

4) 이와 같이 가격조정을 하면, 은행의 수익에는 변동이 없고, 고객은 감소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율(10%) 만큼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과세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서비스 상호간 가격전가는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 특정부문에만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을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가격전가가 심화될 가능

또한 금융서비스 대가 상호 간 가격왜곡(전가)은 ‘VIP고객 우대제도’에서도 일어난다. 은행마다 우대내용은 다소 다를지라도 VIP고객 등에 대한 우대의 주된 내용은 통상 온라인송금수수료 또는 자금이체수수료 같은 부수거래⁵⁾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같은 VIP고객 우대내용인 부수거래 수수료 면제도 광의의 서비스가격 변동(부담 전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창희(2002)는 은행은 예금자나 차입자로부터 거래서비스 대가인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고 이것을 이자에 포함하여 주고받음으로써 은행 서비스대가가 이자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에는 본지점 제도가 있다. 특정의 영업점을 기준으로 보면 자금조달금액(예금)과 자금운용금액(대출)은 상호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영업점과 본점(자금부) 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거래가 필요한데, 이것이 본지점 제도⁶⁾이다. 은행 영업점과 본점 간 자금거래에 적용하는 가격(금리)이 내부이전가격(FTP ; Fund Transfer Pricing)⁷⁾이다. 은행 영업점이 대출고객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출금리 - (지급)내부이전가격⁸⁾”이 되고, 예금고객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수입)내부이전가격 - 예금고객에게 지급하는 예금금리”가 된다. 이와 같이 계산된 대가(금리)는 이창희(2002)가 이자 흐름 속에 숨어서 따로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금융서비스 대가(순수금융서비스대가 ; 부가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⁹⁾. 즉, 굳이 분리하여 계산하자면 계산이 가능하다.

라. 소결

앞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와 쟁점사항을 종합하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쟁점을 이자부문과 이자 이외 부문(수수료 등)으로 구분할 때, 이자 이외 부문에 대한 과세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과세 가능성만이 관건인데, 다음과 같은 논거로 이자에 대하여도 과세가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이자는 부가가치 구성요소 그 자체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성이 높다고 하겠다.

- 5) 부수거래 용어는 은행업무를 구분하는 편의상 사용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은행업무는 예금거래와 대출거래 위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금과 대출거래를 주거래라 부르고, 예금과 대출거래를 하며 on-line 등 은행시스템을 활용하는 송금, 추심, 자동화기기(CD기) 이용 등을 부수거래라 부른다.
- 6) 본지점 제도는 은행영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다. 이 본지점 제도에 따라 영업점은 예금을 유치할 때 운용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예금을 유치하면 자동으로 본점에서 FTP로 자금을 사주기 때문), 반대로 대출할 때는 조달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본지점 제도에 따라 영업점은 예금유치와 대출취급을 자유로이 하게 되고, 특정 영업점의 자금 조달과 운용의 불일치는 자동으로 해소된다.
- 7) 내부이전가격(FTP)을 은행 실무에서는 보통 본지점이율이라 부른다.
- 8) 본 논문에서 대출거래의 수익과 예금거래의 비용 개념에 따라 영업점의 수익을 평가하기 위해 편의상 “(지급) · (수입)내부이전가격”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 내부이전가격은 같은 단일 이율이다.
- 9) 자금사용대가인 이자에 대해서도 VAT 과세가 가능하다면, 여기서 FTP를 사용하여 이자로부터 순수금융서비스대가를 계산해내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있는데, 부가가치의 구성여부는 그 활동이나 용역의 본질적·기능적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달원천을 사업체 내부에 두느냐 외부에 두느냐의 거래 형식에 좌우되는 문제이므로 이자도 외부로부터 제공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이자는 단순히 미래 소비를 현재 소비로 바꾸어 주는 대가로서만 작용하고 부가가치 창출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 대출을 활용하여 미래소비를 현재 소비로 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로 효용을 증대시키는 일이고, 현재 물건의 공간적 재배치인 물류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의 시간적 재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자에 대하여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부동산 임차에 대한 대가로서 임차료와 자금의 사용 대가로서 이자는 기능적·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같다고 보여지며, 현행 임차료에 대한 과세를 감안하면 이자에 대한 과세도 당연히 보인다. 넷째, 해외의 과세 사례로, 중국은 2016년 5월 1일부터 증치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해당) 과세대상에 금융과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여 시행¹⁰⁾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논거에 따라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과세기술허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자에 대해 VAT 과세가 가능하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함에 있어 여타 과세기술허인 쟁점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III.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VAT 과세 현황

1. 금융서비스에 대한 VAT 면세범위 변동 추이

우리 부가가치세법 체계는 법률에서는 면세대상 업종만을 규정하고, 면세대상 세부 업무범위는 시행령에서 나열하고 있다.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만이 면세되는 소위 **positive system** 제도이다. 1977년 7월 1일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차례로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 증권투자신탁업, 전당포업, 환전업, 단기금융업, 상호신용금고업, 신용보증기금업, 보험업, 기타 금전대부업 등 11개 업종을 나열하고 있다. 이 11개의 업은 해당 업종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면세 허용이라고 할 수 있다.

10) 중국 세무총국 사이트, <http://www.chinatax.gov.cn/>

〈표 1〉 최초 시행 금융서비스에 대한 VAT 면세 근거법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7. (생략)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전매품 10. 금융·보험용역 11. 부동산임대 12. 토지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 18. (생략)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업 2. 증권업 3.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환전업 7. 단기금융업 8.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업 10. 보험업 11. 기타 금전대부업 ② (생략) ③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주) 1977.7.1. 시행 「부가가치세법」과 동 법 「시행령」

면세대상 금융서비스 범위에 대한 법체제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는 제1항에서 면세적용을 받을 해당 사업자를, 제2항에서는 제1항 외의 사업자가 그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제1항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적용 대상이 됨을, 제3항은 제1항에 명시된 은행업으로 인정하는 금융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중 과세대상인 업무는 제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금융서비스(명시되었다 제외된 금융서비스 포함)와 제4항에 명시된 금융서비스를 파악하면 된다. 먼저 제1항의 면세적용을 받을 사업자의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2〉 VAT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변동추이

시행일	주요 변동 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¹¹⁾ 제1항)
1996.1.1.	7의2.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추가)
1998.1.1.	11.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u>신기술사업금융업</u>) (추가) 12. 채권추심업 (추가)

11) 2013.7.1. 전면개정 이후 제40조로 바뀌었음

〈표 2〉 VAT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변동추이 (계속)

시행일	주요 변동 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1999.1.1.	12의2. 증권투자회사업 등 (추가) 12의3. 유동화전문회사업 등 (추가) 12의4. 선물거래업 (추가)
2000.1.1.	12의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동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추가)
2001.1.1.	1. ~ 17. (호 번호 정리 및 각 업무의 근거 법률 명시)
2003.1.1.	9의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2004.1.1.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추가) 가. ~ 사. (내용 생략)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추가) 12. 채권추심업(삭제) → 4차례 유예기간 거쳐 2012.12.31. 삭제
2005.1.1.	4. 사. ()에 <u>사모투자전문회사</u> (추가) 아. 투자일임업 (추가)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추가)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증권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추가)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추가)
2006.2.9.	17의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다만,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제외 (추가) 17의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다만,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제외 (추가)
2007.2.28.	4. 아.에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추가) 17의4. 한국투자공사가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 (추가)
2010.1.1.	※ 자동법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체제 변경 및 관련 업무 추가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 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제외 (변경) 라. 신탁업 (변경)

〈표 2〉 VAT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변동추이 (계속)

시행일	주요 변동 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2010.1.1.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변경) 바. 판매회사업 (삭제)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변경)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변경) 카. ~ 하. (신설) (내용 생략) 거. 단기금융업 (신설) ← 제7호 삭제 후 신설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삭제)
2012.2.2.	17의5. 「농림수산물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다만,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제외. (신설) 17의6.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신설)
2013.2.15.	※ 면세대상으로 인정하는 은행업무 범위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이라는 포괄 명시에 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명시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 차. (내용 생략)
2013.7.1.	※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 제33조 →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2014.2.21.	2.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 (신설)
2015.7.1.	1. 사. 보호예수 (삭제) 2. 가. 투자신탁업 (삭제) 나. 투자회사업 (삭제)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변경) 1) ~ 3) (내용 생략)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변경)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 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아.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삭제)

〈표 2〉 VAT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변동추이 (계속)

시행일	주요 변동 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2015.7.1.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 집행사업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변경) 차. 투자유한회사업 (삭제) 카. 투자합자회사업 (삭제) 타. 투자조합업 (삭제) 파. 투자익명조합업 (삭제) 3. 전당포업 (삭제)
	14. 산업발전법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삭제)
2016.2.17.	2.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변경) 1) ~ 4) (내용 생략)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연혁

주)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근거 법률 표시를 생략하였으며, 은행의 주된 업무가 아닌 업무의 그 업무범위 내 세부조정 사항은 생략

<표 2>는 금융·보험업 관련 주요 법률의 제·개정이 있을 때마다 그 대상업무를 면세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제외(부분적으로 변경)시키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온 추이를 보여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직접 과세대상으로 명시(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하고 있는 업무들의 변동추이는 <표 3>과 같다.

〈표 3〉 금융서비스 중 VAT 과세대상 업무 변동 추이

시행일	주요 변동 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2001.1.1. 신설	1.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2.1.1.	1.에서 수입인지 제외
2004.1.1. 변경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단서조항 생략)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13.7.1. 전면개정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 단, 시설대여업자 대외 분 제외)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연혁

주)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근거 법률 표시를 생략하였으며, 은행의 주된 업무가 아닌 업무의 그 업무범위 내 세부조정 사항은 생략

2. 금융서비스 분야별 VAT 과세의 효과 및 한계

금융서비스 VAT 면세범위 변동추이를 보면 매우 다양한 금융·보험 업무 중 극히 일부 업무에 대하여 VAT를 과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보험 업종을 포괄적으로 면세대상으로 하면서도 일부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법제를 선진국 기준으로 유도·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과 금융·보험업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종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입법당국의 의도로 보인다.

<표 4> 2016년 2월말 현재 금융서비스 중 VAT 과세대상 현황

근거 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제외된 업무	1. 채권추심업 2.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3. 보호예수 4.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 신탁업 5.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 중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을 제외한 신탁업 6.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7. 투자자문업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용역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年金計理)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업무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급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단서 조항 기재 생략)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 단, 시설대여업자 대여분 제외)

2016년 2월말 현재 금융서비스 중 VAT 과세대상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정리한 금융서비스 중 VAT 과세대상을 은행업 기준으로 평가하면, 그 대상이 은행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 중 아주 적은 범위에 국한될 뿐 아니라, 또한 과세대상 업무 자체가 은행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들이다.

〈표 5〉 금융서비스 중 VAT 과세대상 비중(추정)

구 분 (백만원)	2014년도	2015년도
매 출 액 (a)	8,675,103	8,127,075
VAT 납부세액	1,628	1,951
VAT 납부세액으로 환산한 매출액 ^{주)} (b)	16,280	19,510
점유비(%) (b/a)	0.19	0.24

자료) K은행 홈페이지, IR자료>2015영업보고서

VAT 납부세액은 과세대상 업무 세액(물품구입 관련으로 부담한 VAT 제외)으로서 담당자 전화면접으로 조사함.

주) 매출액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의 합임.

<표 5>는 K은행의 2014년도¹²⁾와 2015년도 전체 업무 중 과세대상 업무 비중을 추정한 결과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인 업무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각각 1,628백만 원과 1,951백만 원으로, 금액이 매우 미미하다. 부가가치세 납세액으로 환산한 해당 업무의 매출액은 연도별로 각각 16,280백만 원과 19,510백만 원이다. 전체 업무 중 과세대상 비중은 각각 0.19%와 0.24%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표 4>와 <표 5>의 현황과 같이 일부 업무에 대하여만 과세를 함에 따른 한계점도 있다. 첫째는 납세순응비용이다. 소액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대상 업무를 별도로 구분·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는 과세대상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이다. 금융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물품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데, 특정 업무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물품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IV. 국내은행에 대한 VAT 과세 실증분석

이 장에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모든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해 VAT 과세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은행의 실제 거래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금융감독원 공시 2014년 18개 국내은행 경영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실증분석의 틀은 흥범

12) 2014년 2월은 보호예수 등 많은 업무들이 면세대상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바뀐 시점이다. 따라서 2014년 이후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은 과세대상이 확대된 이후의 현황을 파악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교 외 4인(2004)의 “이자 흐름과 VAT 과세 흐름”을 Model로 한다. 이자부문 과세 흐름을 보면, 은행은 예금고객에게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이자를 지급하고, 차주로부터 대출 이자를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 이자를 받으며 VAT납부기일에 수입부가가치세에서 지급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차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일반 과세기업 과세 형태인 “매출액-매입액”으로 바꾸면 은행의 매출액은 대출이자 수입액이고, 매입액은 예금이자 지급액이다.

실증분석을 하면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은행 거래고객을 과세기업, 면세기업, 개인으로 각각 구분하고, 은행의 물건비(real resource 구입비)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다. 은행의 매출에 해당하는 대출거래에 대하여는 고객구분 없이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이자를 받지만, 은행의 매입에 해당하는 예금이자 지급은 고객이 면세기업이거나 개인인 경우 은행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본 실증분석에서 비영리기타 고객은 면세기업 고객으로 간주한다.

1. 이자 부(利子 附) 금융서비스에 대한 VAT 계산

이자란 자금이용자가 그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을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료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실증분석 대상 이자의 범위는 예금이자, 대출이자, 유가증권 중 채권이자 등이다.

〈표 6〉 국내은행 거래대상자별 이자 수익 현황(2014년도)

(단위 : 억 원)

고객 부문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합 계
기업 (과세)	204,998	33,540	182,348	420,886
비영리 기타	35,633	5,830	4,084	45,547
가 계	148,857	24,354	43,882	217,093
합 계	389,488	63,724	230,314	683,526
물건비 ¹³⁾	38,384	7,741	14,844	60,969 ¹⁴⁾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자료, 은행경영통계(2015년판 은행경영통계, 2015.9.)

주) 1. 비영리기타 부문 고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고객으로 간주함

2.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기업(과세), 비영리기타(면세) 및 가계 부문의 거래고객별 금액은 2011년도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거래고객구분별 이자수익의 구성비 평균을 적용하였고, 특수은행은 2014년도 기업은행의 거래고객구분별 이자수익 구성비 평균을 적용하여 배분하였음.

13) 물건비는 전액 과세기업(사업자)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14) 2014년 국내은행의 물건비 총액은 6조9,113억 원이며, 이를 이자수익 부문과 비이자수익 부문으로 안분하여 6조969억 원과 8,144억 원으로 배분하며, 은행이 VAT 10%를 부담하고 구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표 6>의 물건비 6조969억 원은 거래가액 5조5,426억 원과 해당 VAT 5,543억 원으로 분해해야 한다.

〈표 7〉 국내은행 거래대상자별 이자 비용 현황(2014년도)

(단위 : 억 원)

고객 부문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합 계
기업 (과세)	55,811	8,145	70,965	134,921
비영리 기타	39,737	5,799	16,043	61,580
가 계	92,166	13,451	32,502	138,119
합 계	187,714	27,395	119,510	334,620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자료, 은행경영통계(2015년판 은행경영통계, 2015.9.)

주) 1. 비영리기타 부문 고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고객으로 간주함

2.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고객 부문별 금액은 2014년도말 예금은행예금주별 예금잔액 구성비를 적용하여 배분하였고, 특수은행은 2014년도 기업은행 거래고객별 이자비용 구성비를 적용하여 배분함

<표 6>과 <표 7>의 거래고객별 이자를 기준으로 은행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 각 거래주체별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은 다음과 같다. 2014년도 국내은행 이자수익은 68조3,526억 원이고, 이자수익에 대한 VAT는 6조8,353억 원이다. 이중 과세기업이 부담한 4조2,089억 원은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게 된다. 은행이 과세기업으로부터 조달한 예금의 이자지급액은 13조4,921억 원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조3,492억 원을 은행이 부담한 후 사후에 환급받게 된다. 한편 은행은 물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5,543억 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자부문에 대한 VAT를 산출하면 현행 면세 대비 총 세수효과는 2조721억 원이고, 은행들은 면세일 경우에 비해 물건비에 대한 VAT 5,543억 원을 환급받게 된다.

2. 비이자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한 VAT 계산

분석대상 비이자 금융서비스 대가는 수수료, 신탁보수 및 외환관련손익이다. 은행의 매입액(비용)에 해당하는 비이자비용은 대부분 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연결된 기업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절 실증분석에서는 전액 과세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은행에 발생하는 비이자손익 중 본 절 실증분석 대상 비이자 금융서비스 대가에 유가증권매매손익, 유가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관련손익, 대손충당금 등은 제외하였다.

<표 8>과 <표 9>의 거래고객별 비이자수익·비용 금액을 기준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 각 거래주체별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은 다음과 같다. 2014년도 은행들의 비이자수익 합계는 9조6,560억 원이고, 비이자수익에 대한 VAT는 9,656억 원이다. 이중 과세기업이 부담한 수수료 등에 대한 VAT 6,648억 원은 각 기업이 환급받게 된다. 또한 은행이 과세기업에게 지급한 수수료 2조93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93억 원은 은행이 부담한 후 사후에 환급받게 된다. 과세전환에 따른 비이자 부문 총 세수효과는 2,268억 원이고, 은행들은 물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740억 원을 환급받게 된다.

〈표 8〉 국내은행 거래대상자별 비이자수익 현황(2014년도)

(단위 : 억 원)

고객 부문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합 계
기업 (과세)	39,448	3,804	23,232	66,484
비영리 기타	1,750	169	392	2,311
가 계	7,308	705	19,752	27,765
합 계	48,506	4,678	43,376	96,560
물건비	4,780	568	2,796	8,144 ¹⁵⁾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자료, 은행경영통계(2015년판 은행경영통계, 2015.9.)

주) 1. 비영리기타 부문 고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고객으로 간주함

2.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기업(과세), 비영리기타(면세) 및 가계 부문의 거래고객별 금액은 2011년도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거래고객구분별 수수료수익의 구성비 평균을 적용하였고, 특수은행은 2014년도 기업은행의 거래고객구분별 수수료수익의 구성비 평균을 적용하여 배분하였음.

〈표 9〉 국내은행 거래대상자별 비이자비용 현황(2014년도)

(단위 : 억원)

고객 부문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합 계
기업 (과세)	11,591	2,395	6,945	20,931
비영리 기타	—	—	—	—
가 계	—	—	—	—
합 계	11,591	2,395	6,945	20,931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자료, 은행경영통계(2015년판 은행경영통계, 2015.9.)

주) 비이자비용은 대부분이 외국환거래 관련 상대방 은행에 대한 수수료, 신용카드업무 관련 업무연관 회사에 대한 수수료, 대출채권회수비용 등이므로 전액 과세기업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3. 실증분석 결과 및 연구의 한계

2014년도 국내은행의 경영실적자료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전면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자부문과 비이자 부문을 합하여 총 세수는 2조2,989억 원 증가하고, 은행은 이자부(利子附) 거래와 비이자 거래에서는 추가부담이나 환급액이 없고, 물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6,283억 원을 환급받게 된다. 과세전환에 따른 세수 2조2,989억 원은 전액 면세기업과 가계부문 은행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 실증분석은 국내은행 경영실적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세액을 실증 추정해 본 것에 의의가

15) 물건비 8,144억 원은 VAT 포함 가격으로, 거래가액 7,404억 원과 VAT 740억 원으로 분해해야 한다.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있다. 첫째, 고객을 과세기업, 면세기업과 가게 고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중요한 부분인데, 전체 은행에 대하여 실제 고객현황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표본 은행의 고객구성비로 안분하여 분류한 점이다. 둘째, 현행 금융서비스 중에서도 보호예수, 부동산 임대수익,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수익 등 일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실증분석 추정 총 세수는 현행 과세대상 거래 실적이 중복 계산된 측면이 있다. 셋째, 은행의 물품 구입처를 과세기업과 면세기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액 과세기업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면세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만큼 총 세수 금액은 과소 추정되고, 은행이 환급받을 금액은 과다 산출되었을 수 있다.

4. 금융서비스 VAT 과세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납부 방안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세관리 방안이다. 고객이 과세기업인 경우에는 은행이 대출이자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과세기업으로 하여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면 된다. 거래 고객이 면세기업이거나 가게고객인 경우, 대출이자를 받을 때는 은행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이들이 면세자이므로 현행과 같이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또한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되고, 현재 은행에 교육세 징수·납부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면 과세기술 면에서 여타 분야의 부가가치세 징수 시스템 보다 쉽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도 잘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면 세금 징수 관리가 더 간편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Truncated TCA 방식을 과세실무에 적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V. 국내은행에 대한 VAT 과세의 경제적 효과

1. 가계부문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

국내은행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실증분석 결과, 총 세수가 2조2,989억 원 증가하는데, 이는 면세기업과 가게가 부담한 이자부문 VAT 2조6,264억 원, 비이자 부문 VAT 3,008억 원에서 은행들의 물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6,28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가계부문 소득계층별 부담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표 10>은 2015년 전체 가구의 소득5분위별 경상소득, 비소비지출과 이자비용을 나타내고 있

는데, 경상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중이 소득1분위를 제외¹⁶⁾하고 2분위부터 5분위까지 미미하지만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일반 부가가치세가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소득계층별로 미미하지만 역진성이 더 커질 수 있다¹⁷⁾.

〈표 10〉 전 가구 소득5분위별 경상소득, 비소비지출 및 이자비용

(단위 : 만원)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상소득 (a)	5,579	988	2,387	3,898	5,784	11,041
자산	42,208	18,194	22,967	28,521	39,337	80,775
부채	9,614	3,989	5,733	6,513	9,350	17,697
비소비지출 (b)	843	99	357	633	1,013	2,111
이자비용 (c)	170	30	98	144	210	365
c/a	0.0305	0.0304	0.0411	0.0369	0.0363	0.0331
c/b	0.2017	0.3030	0.2745	0.2275	0.2073	0.1729

자료) 통계청, 물가·가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표 11〉 소득5분위별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과 이자비용 비교

(단위 :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	89.6	72.9	63.8	57.9	52.3	
증 감		-16.7	-9.1	-5.9	-5.6	-9.33
증감율		-18.64	-12.48	-9.25	-9.67	-10.47
경상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중	3.04	4.11	3.69	3.63	3.31	
증 감		1.07	-0.42	-0.06	-0.32	-0.27
증감율		35.20	-10.22	-1.63	-8.82	-6.89

자료) 통계청, 물가·가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16) 소득1분위의 경상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중이 크게 낮은 것은 최근들어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DTI를 적용하는 등 금융기관들이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를 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절대 소득 금액이 적어 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1분위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차입받기가 어려워 금융부채 금액이 절대적으로 작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7) 이 결과는 김유찬(2006)의 분석결과와 다르다. 김유찬(2006)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세부담에서 역진적인 성격을 보이는데 비하여, 대출이자(기타비소비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비례세적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을 보인다’라고 분석하였다.

일반 소비세의 역진성 대비 이자에 대한 VAT의 역진성을 비교를 보자. <표 11>은 소득 5분 위별로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과 이자비용의 비중을 보여준다. 소득 분위별 경상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중은 2분위부터 줄어들고 있어 미미하게 역진성을 띠고 있으나 그 폭은 평균 0.27%¹⁸⁾로 소비지출 비중 평균 9.33% 대비 2.9%에 불과하다. 대출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소득 5분위별 역진성은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그 폭이 매우 작고, 일반 소비지출의 역진성에 대비한 상대적인 역진성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2. 은행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대출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차주가 과세기업인 경우, 차주는 대출이자에 VAT를 더한 이자를 은행에 납부하고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전액 환급받게 되므로 차주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이자율 변동은 없다. 반면 차주가 개인이나 면세기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만큼 차주 부담 대출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이자에 VAT가 과세된다 하여 세액 전액이 차주에게 전가될지는 미지수이다. 은행과 차주의 bargain-power에 따라 대출금리 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이창희 2015, 997).

예금이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예금고객이 부가가치세 과세기업이면 은행이 부가가치세 포함 예금이자를 예금주에게 지급하고, 은행은 나중에 이를 환급받게 되므로 예금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금거래 고객이 면세기업이거나 개인인 경우에는 현행 면세일 경우와 같다. 한편, 은행은 물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현행 면세에 비해 추가 수익 효과가 생기므로 그 만큼 대출이자율 인하 또는 예금금리 인상 여력이 생길 것이다.

3. 예금 및 대출수요에 미치는 영향

앞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거래고객과 관계없이 예금금리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고, 대출금리는 차주가 과세기업인 경우 영향이 없고, 면세기업이거나 개인인 경우에는 실질금리가 세율만큼 오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면세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 예금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며,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세기업에 대하여는 중립적이며, 면세기업과 개인 고객에게는 부(負)의 효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강종구·임호성(2015)은 대출 공급요인과 수요요인이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3개 일반은행의 2004년 1분기에서 2014년 3분기까지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대출규모와 대

18) 이자비용 비중 증감은 2분위부터 5분위까지 증감 평균임. 그것은 앞에서 기술한 사유와 같이 1분위의 이자비용 비중이 크게 낮아 역진성 파악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대출금리에 대한 대출수요와 공급의 구조식에서 대출공급곡선의 기울기(금리 R의 계수)는 0.051로, 대출수요곡선의 기울기(금리 R의 계수)는 -0.057로 각각 산출되어 대출금리 변동에 대해 대출 수요와 공급이 유사한 정도¹⁹⁾로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출공급과 대출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식에 채택된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 가계대출의 경우 대체로 공급요인의 영향이 뚜렷하고, 기업대출은 수요요인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가계대출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 유도는 공급사이드인 은행을 통해서, 기업대출시장에서는 수요 사이드인 기업들의 대출유인동기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2015년 4/4분기와 2016년 1/4분기 국내 가계대출시장 변화는 이 추정이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12월, 금융당국에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 위주로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²⁰⁾을 발표하고, 수도권은 2016년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

〈표 12〉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변화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2015. 9월 잔액	2015. 4/4		2016. 1/4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예금은행	5,415,475	221,802	4.10	55,854	0.99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2,390,426	95,897	4.01	75,606	3.04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보도자료, “월중 금융시장 동향”(2016.3.9. 2016.6.8.)

〈표 12〉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2016년 1/4분기 가계대출시장 변화 동향이다. 2016년 1/4분기와 2015년 4/4분기를 비교해보면 은행권(예금은행)은 급격히 줄고 2금융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남을 보여준다. 2015년 4/4분기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5,897억 원으로 은행권 증가금액 22조1,802억 원의 43.2% 수준이었는데, 은행권에 대출규제가 이루어진 2016년 1/4분기에는 2금융권 증가액이 7조5,606억 원으로 은행권 증가액 5조5,854억 원의 135.4%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 4/4분기와 2016년 1/4분기 동안, 예금은행과 2금융권의 가중평균 신규취급금리 변화를 보면, 예금은행은 3.15% → 3.24%로 0.09%p(2.86%) 상승한 반면, 2금융권은 15.76% → 16.94%로 1.18%p(7.49%) 상승하여 2금융권이 예금은행에 비해 2.6배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같은 기간 대출은 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는데, 2금융권의 높은 금리를 감수하면서 은행권의 규제를 피해 2금융권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준다. 이

19) 변동 크기는 비슷하지만 방향은 반대이다.

20) 금융위원회, 2015.12.14. 보도자료,

결과는 대출수요가 금리보다는 정책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국내 예금은행의 200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월별 신규취급금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증감에 대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대출금리와 대출증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0579로 나타나 대출금리와 주택자금대출 순증 간 상관관계 또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수준은 2003년 3월 6.96%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에서 2015년 12월에는 3.23%로 낮아져 대출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개별 고객이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대출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4. 조직변경의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갖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경제적 왜곡효과를 꼽는다. 김유찬·한광석(2006)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VAT 면세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투입재를 자가생산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조직변경의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기능적/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라도 조직 내 인력으로 자체수행하는 경우와 outsourcing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가 다르다. 현재 금융·보험업은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²¹⁾은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두 부분의 조직운용상황을 K은행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3〉 K은행의 자회사 거래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신용정보(주)		(주)○○○시스템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매출액 (a)	21,621	22,921	160,758	131,318
中 母 은행실적(b)	13,141	14,412	135,000	107,983
中 관계회사실적(c)	13,744	14,936	141,607	116,489
점유비중	b/a	60.8	84.0	82.2
	c/a	63.6	88.1	88.7

자료) ○○○신용정보(주), (주)○○○시스템 2015년도 감사보고서

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제4항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않는 업무)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급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대한 대행용역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표 13>의 ○○○신용정보(주)와 (주)○○○시스템은 K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하는 이 업무들은 과거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들이었다. 그러나 <표 13> 거래실적 현황에 의하면 K은행은 2015년도에 약 150억 원 해당 업무를 자회사인 ○○○신용정보(주)에 의뢰하였고, 은행은 부가가치세 약 15억 원을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 수행할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다. 조세가 부과됨으로써 조직변경에 미치는 영향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궁하기 어렵고 선행연구에서 제기하였던 논리들과 상충되는 결과이다.

은행계 금융지주회사들은 많은 자회사들을 두고 있는데, 명분은 국제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겸업화 및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표 13> 자회사의 모행 의존도를 보면 각각 65%, 90%에 가까운 상황이다. 자회사 설립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모행의 업무처리 대행회사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회사가 자원을 자체조달할지, outsourcing 할지의 결정은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것이고, 조세도 주요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표 13>과 <표 14>를 보면 세금이 조직변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 조직변경에 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은 두 조직 간의 인건비 같은 직접 비용 차이나 조직의 대규모화를 통한 인사 영향력 확대 의도 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표 14>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은행
보유 자회사	12개	13개	10개	8개
신용정보사 매출	38,792	28,145	<없음>	31,681
中 모행실적	31,889	18,114	—	19,699
점유비	82.2	64.4	—	62.2

자료) 2016.4.30. 현재, 각 금융그룹 홈페이지

주) 매출은 2014년도 실적이며, 각 업무담당자 전화면접을 통하여 조사함

VI. 결 론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 가장 쟁점은 이자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다. 앞 제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충분한 논거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자는 미래소비를 현재소비로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고, 이는 개인의 효용을 증대시키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고, 이자의 성격을 부동산 임대료와 비교하면 과세

형평이나 논리 상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자 이외의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이자 포함 모든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일반 과세기업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CIS(credit-invoice-system)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이자 기준 과세흐름을 보면 수입이자나 매출액에 해당하고, 지급이자나 매입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2014년도 18개 국내은행의 총괄적 경영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매출세액-매입세액’의 틀로 부가가치세액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이자부문과 비이자 부문을 합하여 총 세수는 2조2,989억 원 증가하며, 은행은 물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6,283억 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은 이자율이나 수수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하고, 소요되는 자원을 직접 조달할지 outsourcing 할지를 고려할 때 각 부문별 보다 정확한 원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현행의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더라도 과세기술적인 문제 즉,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징수·납부와 같은 실무적인 사항도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면세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1)가계부문 소득계층별 세부담을 가계소득 소득5분위별 이자비용 부담금액(이자비용÷경상소득)으로 분석해보면 1분위를 제외하고 2분위 0.0411에서 5분위 0.0311로 순차적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계층별로 역진성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2)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예금이자율은 변동이 없고, (실질)대출이자율의 경우 차주가 면세사업자나 가계일 때 세율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금·대출거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3)조직변경의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장하던 것과는 일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은행 내부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일부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서도 외부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 외의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과세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인 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과세로 전환했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도 있고, 은행은 물건구입비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면세에 따른 경제 왜곡현상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에 따른 경제적 왜곡현상의 완화와 가계의 세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완전 면세제도라고 일컫는 영세율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이는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세수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과세당국이 채택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시기적으로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개별 가계가 부담하는 세액이 크지 않으므로 과세로 전환한다면 현재가 적기라고 판단되며, 과세전환으로의 연착륙을 위해 가계부문에 한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되, 일본의 소비세 시행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경과규정을 두고 점진적으로 정상세율로 이행해 나가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종구 · 임호성. 2015. “우리나라 대출 수요와 공급의 변동요인 분석”. BOK 경제연구 제2015-17
- 김유찬. 2013a. “부가가치세 면세와 경감세율제도에 대한 고찰”. 『조세법연구』 XIX-3
- 김유찬. 2013b. “유효부가가치세율 추정에 대한 연구 : 한국과 독일의 비교”. 『재정정책논집』 제15집 제4호
- 김유찬 · 장근호. 2006.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세무학회
- 김유찬 · 한광석. 2006.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 김종완. 2015.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3집
- 안창남. 2002. “금융용역과 부가가치세”. 『조세법연구』 Vol.8
- 이창희. 2002.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서울대 법학 제43권 제3호
- 이창희. 2015. 『세법강의』 제13판, 박영사
- 최명근. 2000. 『부가가치세법론』 제13판. 영화조세통람사
- 홍범교 외 4인. 2004. 『금융산업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홍성훈 · 성명재. 2013.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Chia, N.C./J.Whalley. 1999. “The Tax Treatment of Financial Intermediaries”, *Journal of money, Credit, Banking*, Vol.31.
- Grubert, H./J.Mackie. 2000. “Must Financial Services be Taxed under a Consumption Tax?”, *National Tax Journal*, Vol.53.
- Hoffman, A./S.N.Poddar/J.Whally. 1987. “Taxation of Banking Services Under a Consumption Type, Destination Basis VAT”, *National Tax Journal*, Vol.40.
- Jack, W. 2000. “The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Broad-Based Consumption Tax”, *National Tax Journal*, Vol.53.
- McCann, E./T.Edgar. 2003. “VAT Treatment of Interest and Financial Services with Competitive Banking and Insurance Sectors”, *Tax Notes International*, Vol.30.
- Merrill, P./H.Adrian. 1995. “Taxation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Consumption Tax”,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Office of the Secretary, Department of Treasury. 1984. “Tax Reform for Fairness, Simplicity and Economic Growth”
- Poddar, S.N./M.English. 1997. “Taxation of Financial Services under Value Added Tax ; Applying the Cash-Flow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Vol.50.
- Shoup, C. 1947. “Principles of National Income Analysis”
- Steuerle, C.E. 1985. “Taxes, Loans and Inflation : How the Nation’s Wealth Becomes Misallocated”

A Study on the VAT Taxa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 of the Korean Banks based on Overall Management Performances

Kim Yuchan* · Kim Jongwan**

— <Abstract> —

The financial and insurance industry is one of the major industries in the country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GDP or its relationship with other industries. But this whole industry is exempted from VAT. While VAT is levied on ordinary necessities such as ramen, the fact that VAT is exempted to this major industry is questionable. Lots of precedent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VAT taxation on financial services. The most important issue is whether taxation is possible on interes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VAT taxation on interest has sufficient persuasive pow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argument of VAT taxation on financial services and to analyze the tax revenue and its effects when VAT taxation is imposed on Korean bank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otal tax revenue increases by 2,298.9 billion won, and banks are able to refund a VAT of 628.3 billion won for the goods expenses. The economic effect of the taxation transition is that there is petty negative incidence in the tax burden of the household income quintile, there is no effect on the deposit interest rate, and the interest rate on the loan is likely to rise by the tax rate on the interest rate on households and tax exempt companie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effect on deposit transactions, no effect on the demand for lending of the taxable firms, and negative effects on household loans, but very limited in its effect.

When converting financial services into taxation, the household sector should pay most of the increase in tax revenues, and the fact that the household income quintile is inverted nature, though not significant, is a burden for taxation. However, under the current low interest rate, the tax burden per household is unlikely to be large. It would be desirable to relax the tax burdens that the household sector should bear additional burdens, and to apply the reduced tax rate to the household sector for the soft landing of the system.

<Key words> financial service, VAT, tax exemption, policy norm, Korean banks VAT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ongik University, 99yckim@gmail.com, Corresponding Author

** Expert Advisor, KICOX Incheon HQ, jwangel315@gmail.com, First Author